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25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361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2523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20. 2. 4.

판결선고 2020. 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9.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한 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변제한 것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전거래의 성격에 대한 판단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원고로부터 원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원금손실을 입은 바는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투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 수익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정산절차도 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게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금손실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와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를 반복하였고, 그 금전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투자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약정은 투자약정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약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원고에게 총 43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더하여 이자 189,0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이자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바에 따라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무효인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원금 432,000,000원에 대한 최초 대여일이 속한 달의 초일인 2012. 7. 1.부터 최후 대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3. 3. 31.까지 연 3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97,200,000원(= 432,000,000원 × 연 30% × 9개월 ÷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91,850,000원(= 189,050,000원 - 97,200,000원)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 부당이득금 9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2019.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9. 9.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으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자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지급하여 결국 차용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초과지급된 이자의 지급 당시 정확하게 차용원금 및 이자가 얼마나 남아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차용원리금채무의 소멸사실을 알면서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도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형관